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 일

여수시장 2021.12.16



여수시 조례 제1803호

붙임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03호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현장점검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여수시 건축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현장점검 대행 수수료) 법</u> <u>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u> <u>「여수시 건축 조례」 제23조를 준</u> <u>용한다.</u>